
 <b>인간다운 사랑</b> <b>아름다운 봉사</b> <b>정의로운 실천</b>	<b>연수</b>  <b>자료</b>	<b>결</b>	담당	부장	교감
		<b>재</b>	일 시 : 2022.05.02.		
<b>불법찬조금 예방 연수</b>		연수자 : 교감 이동찬			

- 혁신교육부 -

## 1 추진 배경 및 실시 근거

### □ 기본방향

<b>목표</b>	<b>교육수요자(학부모·학생)에게 차별없고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</b>
<b>기본 방향</b>	<b>선생님·학부모·학생 간의 투명성·신뢰성·만족도 제고</b>
	<b>예방중심의 불법찬조금 대책을 통한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</b>
	<b>건전하고 합법적인 학교 발전기금 조성·운영 유도</b>

### □ 추진 배경

-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 불법 찬조금\* 관행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일부에서는 여전히 관행 잔존
  - \*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, 조성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
- 신학기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들에게 불법찬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, 관행적 불법 찬조금 모금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지도 필요

### □ 실시 근거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조, 제33조(학교발전기금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
-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
- 「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」
- 「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」

## 2 불법찬조금 정의 및 문제점

### □ 불법찬조금 정의

<b>불법찬조금</b>
<b>불법찬조금은</b> 학부모단체(학교운영위원회, 학부모회, 운동부 학부모, 방과후교육활동·청소년단체, 교육활동후원단체) 등이 <b>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</b>
<b>◇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.</b>

## □ 불법찬조금 발생에 따른 문제점

- 사안 발생 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, 국민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과 공교육의 공정성 의심
- 금품·향응 수수에 따른 교직원과 학부모간 신뢰도 저하
- 불투명한 모금과정과 집행으로 인한 학부모 단체 구성원 간 분쟁 발생
-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수수자·제공자 모두 처벌

## 3

## 불법찬조금 유형 및 처벌 규정

### □ 불법찬조금 주요 유형

#### 주요 유형

- 예술학교 학부모회에서
  - ▶ 정기공연, 워크숍 등에 필요한 소품 구입, 운영비 등을 **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**하여 집행
- 학부모회, 학급임원회 등에서
  - ▶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,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**학생 간식비, 학교행사 지원(스승의 날, 소풍, 운동회, 현장학습, 졸업식 등), 교직원 선물비, 학급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·모금**하여 집행
- 교직원 등이
  - ▶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,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
- 학교운영위원회에서 **심의·의결 절차 없이 모금 또는 금품 접수**

### □ 학교발전기금회계 및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벌규정 안내

####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
- 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·후원·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 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-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- ⑤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⇒ **불법찬조금 수수자와 제공자도 처벌**

\* **법령위반 시[제21조(징계), 제23조(과태료 부과)]**

- 공직자 등(교직원) : 징계대상,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
- 제공자 :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

【별첨1】

수수금지 금품 등 처리 안내

1. 수수금지 금품 등 처리 요령

※ 「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」 제25조, 「청탁금지법」 제9조

○ 공직자(교직원등)가 수수 금지 촌지(금품등)를 받은 경우 신고와 함께 **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환**하여야 함

○ **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** 휴대폰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구두로 지체 없이 거절의 의사 표시

○ 금품 등이 전달된 시점과 공직자등(교직원등)이 안 시점에 차이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반환

예) 외국 출장 중 선물배달 사실을 알고 출장기간이 상당한 시간 소요될 경우 신고는 선물 수수 인지 시점에 하고 반환은 출장 복귀 후 지체 없이 실시

○ 제공자에게 **객관적 전달방법인 택배, 퀵서비스 등을 통해 반환하고 영수증 등 반환 증명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반환비용 청구 시 증빙자료로 이용**

※ 택배, 퀵서비스, 우편 등 편리한 운송 방법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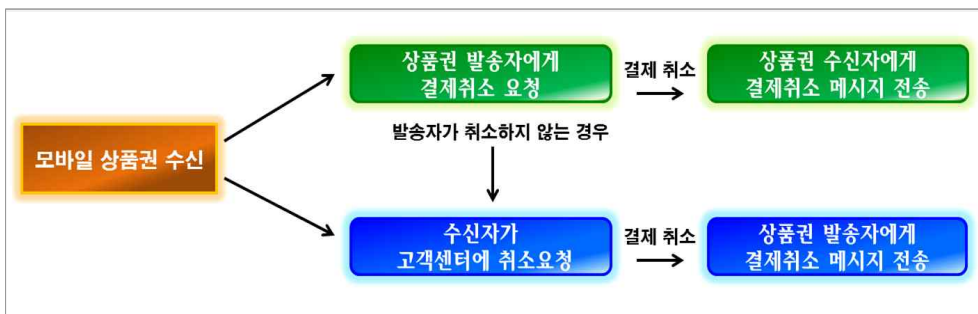
○ 반환에 있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관에 택배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비용을 청구

2. 모바일 상품권 반환

※ 「모바일 상품권 수신 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처리절차 안내」 (감사관-6052, 2016.5.12.)

○ 상대방에게 보내고 싶은 상품(커피 등)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및 SNS를 통해 바코드 형태로 전송하면 상대방이 매장에서 실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바일용 쿠폰

○ 취소절차



○ 상품권 수신 즉시 발송인에게 결제취소 요청 또는 해당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직접 결제취소 요청

○ 즉시 취소가 어려운 경우,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수신거부 의사표명 후 처리절차 이행

※ 결제취소 처리 시, 취소 상대방에게 결제취소 문자 메시지가 전송됨

##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(2021. 3. 1. 시행)

금 액			처분기준 금액					
			500만원 미만	500만원 이상 1,000만원 미만	1,000만원 이상 3,000만원 미만	3,000만원 이상 5,000만원 미만	5,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	1억원 이상
찬조금 모금 · 조성	모금 강요	직접개입	경고	경고-견책	견책-정직	정직	정직-해임	해임-파면
		간접개입	경고		경고-견책	견책-감봉	감봉-정직	정직-해임
	절차 미이행	부당목적	주의경고		경고-견책	견책	견책-감봉	감봉-강등
		정당목적	주의	주의경고	경고	경고-견책	견책-감봉	감봉-정직
	그 외의 경우		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양정 결정					
찬조금 집행	부당한 목적 집행	모금강요 직접개입	경고	견책	견책-감봉	감봉-정직	정직-해임	해임-파면
		모금강요 간접개입	경고	경고-견책	견책	견책-감봉	감봉-정직	정직-해임
		모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(조성절차 미이행 등)	경고-견책		견책	견책-감봉	감봉	감봉-강등
	정당한 목적 집행	모금강요 직접개입	경고	경고-견책	견책-감봉	감봉-정직	정직-강등	정직-해임
		모금강요 간접개입	경고	경고-견책	견책	견책-감봉	감봉-정직	정직-강등
		모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(조성절차 미이행 등)	경고	경고-견책		견책	견책-감봉	감봉-정직
	교직원 개인적 금품·향응수수		「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」 [별표4]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적용					
	그 외의 경우		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양정 결정					
불법찬조금 홍보 미실시			경고					